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78
----------	-------

발의연월일 : 2026. 1. 12.

발 의 자 : 조정식 · 이수진 · 이해식
이성윤 · 정준호 · 김문수
한정애 · 백선희 · 김영환
김병주 · 이정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한편 법 제11조에서 열거된 준수사항 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제11조제24항),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면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500만원의 법정상한액을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를 필요로 하는 준수사항이라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4항을 제2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5항(종전의 제2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항까지의”를 “제24항까지의”로 한다.

②4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3. 위·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탈취하는 등 위·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②③ (생략) <u><신설></u>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②③ (현행과 같음) <u>②④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u>1.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u> <u>2.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u> <u>3. 위·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탈취하는 등 위·수탁차주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u> <u>②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u>
	<u>②⑤ -----</u>

터 <u>제23항까지의</u> 준수사항 외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 2. (생 략)	-- <u>제24항까지의</u> ----- ----- -----. 1. · 2. (현행과 같음)
---	--